

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

지원대상자



증증후유장애인

자동차사고로 「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」에 의한 1~4급에 해당되는 증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

유자녀(幼子女)

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(고교 재학의 경우만 20세 이하)

피부양 노부모

①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②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(또는 배우자)의 직계존속 ③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(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)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현재 65세 이상인 자

지원요건

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,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

-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(조건부 수급자 포함)
-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

대상별 지원금액

지원대상	지원항목	지원금액
증증후유장애인	재활보조금	월 20만원
	자립지원금	월 6만원 한도 매칭
유자녀	초등	분기 20만원
	중등	분기 30만원
	고등	분기 40만원
피부양 노부모	무이자 생활자금대출	월 20만원
	피부양보조금	월 20만원

증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

- 지원대상 :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증증후유장애인
- 지원금액 : 월 20만원 (매월 말 지급)
- 신청서류 : 지원신청 공통서류 (6종)

피부양 보조금 지원

- 지원대상 :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
- 지원금액 : 월 20만원 (매월 말 지급)
- 신청서류
 - 지원신청 공통서류 (6종)
 -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)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증 등



초 · 중 · 고등 장학금 지원

•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

장학종류	제학(초·중·고)	미재학
지원대상 및 기준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「평생 교육법」 제 31조 제 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	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2조 제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
신청서류	지원신청 공통서류 (6종) 재학증명서	지원신청 공통서류 (6종)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 (공단서식)

• 지원금액

대상	지원금액	신청기간(연4회)	지원시기(연4회)
초등학생	분기 20만원	(1학기) 3, 4월	(1학기) 4, 5월
중학생	분기 30만원	(2학기) 9월, 10월	(2학기) 10, 11월
고등학생	분기 40만원		

